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변경허가 포함)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서류를 보완하고,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여 결격사유의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허가받은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에서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을 시행하는 사업장별로 시설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 추가(안 제3조·제4조)

- 1) 법률 제3조(제조·판매의 허가) 제4항과 제5항에서 제조·판매의 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는 바,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변경허가신청 절차상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필수 구비서류를 보완

2)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를 추가로 규정

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보완(안 제10조)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이

법 제4조에서 명시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제조·판매 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제1항제1호를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를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단, 제조·판매시설이 여러 곳인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를 모두 제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표자 증명사진(3×4cm) 1장

제3조제2항에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신청에 한한다), 건축물대장,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로 한다.

제4조의 법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에 “변경허가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여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가증

2. 대표자 증명사진(3x4cm) 1장

3.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 제4조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호에 따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 (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 절차) ① (현행과 같음)
1.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1.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 (단, <u>제조·판매시설이 여러 곳인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의 시설도면 및 시설설명서를 모두 제출한다</u>)
2.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신설>	2. (현행과 같음) 3. <u>대표자 증명사진(3×4cm) 1장</u>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u>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신청에 한한다), 건축물대장,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u> 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

현행	개정안
제4조 (변경허가 절차)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변경허가 절차) ① ----- ----- -----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1. 허가증 2. 대표자 증명사진(3x4cm) 1장 3.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등(법률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물자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5687